

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18~11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18. 11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요구이유

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거창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4항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따라 거창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 설 명 : 거창시니어클럽

나. 시설기준

- 1) 사무실, 상담실 또는 교육실/ 1실 이상
- 2) 노인일자리 사업장(제조·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활동에 필요한 공간)/ 1개 이상
- 3) 시설의 규모 : 연면적이 100m² 이상(사무실 및 사업장 등)

다. 사업내용 : 거창시니어클럽 운영

라. 위탁대상 사무

○ 운영

-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-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, 제조 판매형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
- 지역사회 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각종 교육 훈련
-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, 지역 연대 강화
-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
-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항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·지원 등
-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위탁 한 사항

마. 위탁기간 : 2019. 3. 21. ~ 2024. 3. 20.(5년)

바. 수탁자격 :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사.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

아. 소요예산

- 거창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 :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(비용의 부담)
 -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

3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

- 현 거창시니어클럽은 2013년 최초 협약이후 관내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일자리 개발·보급·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하였으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함

나. 관계법령

-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(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「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다. 향후계획

- 2019. 1. 14.(월) ~ 1. 28.(월) : 수탁자 모집 공고
- 2019. 1. 29.(화) ~ 1. 31.(목) : 수탁법인 신청 접수
- 2019. 2. 1. (금) ~ 2. 15.(금) : 선정심의위원회 구성
- 2019. 2. 18. (월) ~ 2. 28.(목) :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
- 2019. 3월 초순 : 거창시니어클럽 위·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
- 2019. 3. 20일 한 : 수탁법인 교체 시 인수·인계

라. 예산조치

- 2019년 거창시니어클럽 운영비 본예산 반영

마.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계획 : 따로 붙임

『거창시니어클럽』 민간위탁 추진 계획

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『거창시니어클럽』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수탁자 선정관련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.

1 위탁 운영 개요

- 시설명 : 거창시니어클럽
- 위치 : 거창군 관내
- 위탁기간 : 2019. 3. 21 ~2024. 3. 20(5년)
 - ※ 계약일로부터 5년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)
- 법적근거
 - 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
 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
 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 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

2 수탁자 선정 방침

- 수탁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유지
-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보장
-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
- 심사대상이 1개 법인이라도 심사,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

3 신청 자격 및 조건

- 신청자격 :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
 - 주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, 다만 경상남도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경상남도 내 지부(지회, 지사 등)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.

□ 시설기준

- 사무실, 상담실 또는 교육실 : 1실 이상
- 노인 일자리 사업장(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·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) : 1개 이상
- 시설의 규모 : 연면적이 100㎡이상(사무실 및 사업장 등)

□ 인력기준

- 인력배치 :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 둘 것
-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의 장의 자격 : 노인일자리지원 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3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□ 위탁범위

- 시니어클럽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-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, 제조 판매형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
- 지역사회 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각종 교육 훈련
-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, 지역 연대 강화
-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항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·지원 등

□ 위탁계약의 해지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유용한 경우

4 공모 및 선정절차

□ 사업공모

- 모집방법 : 공개모집
- 공고방법 : 거창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

□ 신청서류 접수
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접수장소 : 거창군 복지정책과 1층 노인복지담당(☎055-940-3123)
- 제출서류
 -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 1부.
 - 사업계획서 및 사업별 세부계획서 각 1부
 - 법인 등기부등본, 정관사본(법인), 고유번호증 사본, 회칙(단체) 각 1부
 - 시니어클럽 대표자의 이력·경력서 및 인력운영 계획서 1부
 - 사무소 및 사업장 확보관련 서류 :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

□ 수탁자 심의위원회 구성

-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7조의 4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
- 심사위원회 구성(6명이상) :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가(시니어클럽 협회 관계자, 학계 등), 해당공무원 등

□ 선정절차

- 공모 → 접수 → 서류심사 → 면접 →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→ 수탁자 결정 → 위·수탁 계약체결 → 공증

5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

- **심사방법** : 심사위원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

□ **선정기준**(7개 항목, 15개 지표)

- 수탁법인(법인의 운영기반, 사업수행 실적, 별도 사무실 확보여부) : 3개 항목
- 사업에 대한 이해(수탁의 목적과 취지, 사업활성화 전략) : 2개 항목
- 운영계획(사업계획, 운영관리계획) : 2개 항목

□ **세부항목별 심사기준안**

구분	합계	수탁법인	사업에 대한 이해	운영계획	비고
배점	100	30	20	50	

6 **향후 추진일정**

- 의회동의 : 2018. 12. 20.(목)까지
- 모집공고 : 2019. 1. 14.(월) ~ 2019. 1. 28.(월)
- 접수 : 2019. 1. 28.(화) ~ 1. 31.(목)
-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2019. 2. 1.(금) ~ 2. 15.(금)
 - 구성요건 : 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」 제21조 제4항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구성
-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: 2019. 2. 18.(월) ~ 2. 28.(목)
- 위·수탁협약체결 및 공증 : 2018. 3월 초
- 운영법인 교체 시 인수·인계 : ~ 2018. 3. 20일 한

[관계법령]

노인복지법

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"노인일자리전담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 <개정 2011. 4. 7.>

1. 노인인력개발기관: 노인일자리개발·보급사업, 조사사업, 교육·홍보 및 협력사업, 프로그램인증·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
2. 노인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3. 노인취업알선기관: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4. 7.>

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4. 7.>

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3. 6. 4.>

[본조신설 2005. 7. 13.]

제45조(비용의 부담) ① 삭제 <2007. 4. 25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<개정 2005. 7. 13., 2011. 4. 7.>

1.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
2.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·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
3. 제33조제1항·제35조제1항·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

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

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>
-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>
-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>

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>
 -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>
 -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>
 -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>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4. 9. 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 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2. 8. 3.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(개정 2013.6.12)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

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및 후단신설 2013.6.12)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3.6.12)